



제249회 임시회
2006.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4월 14일

○ 회부일자 : 2006년 4월 17일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재원 조달을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기금조성 (안 제2조)
 -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비용 교부금
 - 「수환수렵장」 운용 수익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등

-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5조)
 - 충청북도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서 대행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존 시책 및 지역환경 개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존 기금을 조성,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사용,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2조의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기금조성 계획에(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담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의 징수교부금, 순환수렵장 운영수익금, 도 출연금)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2005. 8. 4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의 규정에 기금 운용관리의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 하도록 하고 있음은 위원회 수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별도 위원회 구성이 요구되는데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